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6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각 시·군 등에 시달됨에 따라 이 중 낙농·육우부분만을 발췌하여 월간 낙농육우에 게재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요약·정리하였으므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해당 시·도, 시·군·자치구 축산담당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I 사료사업지원(자율)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1.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축분퇴비 및 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
-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 유희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확대
-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92~'03	2004	2005	2006	'07~'13
사업량(개소)	314,651	65,000	65,000	65,000	
총사업비	202,586	33,009	49,026	51,689	361,823
사보조	66,992	10,352	17,395	20,613	144,291
업응자	55,244	3,205	5,615	6,900	48,300
지방비	5,815	3,229	5,800	9,446	66,122
자부담	74,535	16,224	20,216	14,730	103,110

3.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스설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제조·운반비, 기계·장비 지원(보조)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나. 지원대상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연결체 등 포함) 우선지원
-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 ※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20ha 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벼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생산자단체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경종농가 :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로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
 - ① 지역 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 ②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경종농가
 - ③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 ④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 50마리/1일 섭취량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업업체,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 ※ 축산업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사업참여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우선 지원

다.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3%

라. 사업 시행체계

-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 →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시·군)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사업수요조사 실시(시·군 및 시·도) → 예산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농림부) → 사업신청 및 계약실시(농가, 연결체 → 시·군) →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농림부) → 사업실시(재배·수확·운송) → 사업실적 제출 및 자금배정신청(시·군, 시·도) → 사업비 배정(농림부)

〈추진체계〉

가. 주관기관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시·군(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0)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지원부(02-2080-6568)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1.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 생산

가. 초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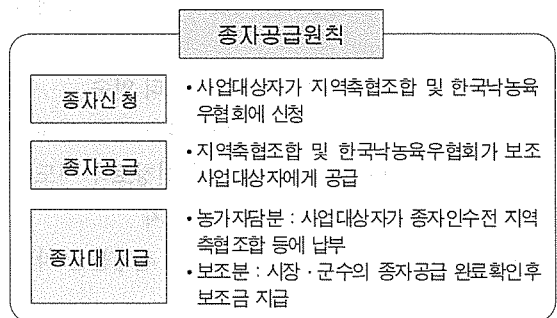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 ※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퇴·액비 활용)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용 종자공급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신규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직접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지역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 요청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신청 접수. 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촉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 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라. 벼짚(보리짚) 처리(암모니아, 곤포사일리지) 사업

〈벼짚 암모니아 처리〉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벼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생벼짚 곤포사일리지〉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 1롤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가능

※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에 정부지원금은 농협중앙회의 공급계약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벗짚수거 및 처리 등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3. 기계·장비 기타(응자)

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조사료생산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농업회사법인, 축협조합
 - ※ 축산업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랜치, FRP 사일로 등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더,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융자 80%, 자담 2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 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 회수 조치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 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 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 기계·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을 확인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 알선 병행
-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② 상기 호 이외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 2.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4.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가. 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

- 재배작목 : 보리, 호밀,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
-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 운반비 등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톤당 3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0천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
- 연결체의 총체보리 생산·공급계약 체결
 - 보리재배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배하는 조건으로 연결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연결체는 보리·호맥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경종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0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보리재배농가 및 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경종농가에게 지급

나.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한 연결체
-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지원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기존 확보한 장비를 포함하여 30ha당 1조를 기준으로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장비의 노후화, 능력부족에 따른 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
 - ※ 1조 : 트랙터 3기 + 부속기 각 1기
 - 30ha 미만인 연결체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및 보유장비를 감안하여 시·군 판단하에 부족한 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연결체)의 보관시설(창고, 비가림시설 등) 확보 등 지원장비 사후관리 능력(계획)을 확인하고 선정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기계·장비 기타(유자)사업과 동일함

②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율)

1.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2000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 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
- 액비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
 - ※ 汚糞法 제4조의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의 신규지원은 불가(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가능)

2.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분뇨처리대책 지역
- (2) 사업대상자
 -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

- 가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세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 등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가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 지원가능
- 축분퇴비유통센터(공동퇴비장)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조합
- 가축사육밀집 지역 등 자체 “가축분뇨 공동 처리대책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검토 후 지원 계획임

(다)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농·축협작목반 등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 액비화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

- 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の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정화방류수탈색장치,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나) 공동시설

- 축분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통풍·교반식 등), 공동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공동퇴비사, 가축분뇨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액비화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の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펠릿, 가축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더,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개소당 한도액 : 30백만원 이내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큇카, 암롤카, 액비살포차량, 암롤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 액비저장조 지원
 - 일반폐사축 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 종돈·종계장 및 한센 정착촌에 설치가능
 - 악취·가축방역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설치
- (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펄프식 교반시설 등)
- (라) 액비살포비지원 : 150천원/ha
- * 액비살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별도 통보

(마) 지원규모 및 조건

- 1)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가)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나)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축분비료유통센터 :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4~5)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2006.1.1부터 2006.12.31까지(1년)

3.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툽밥제조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 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2001.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 시설·기계 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

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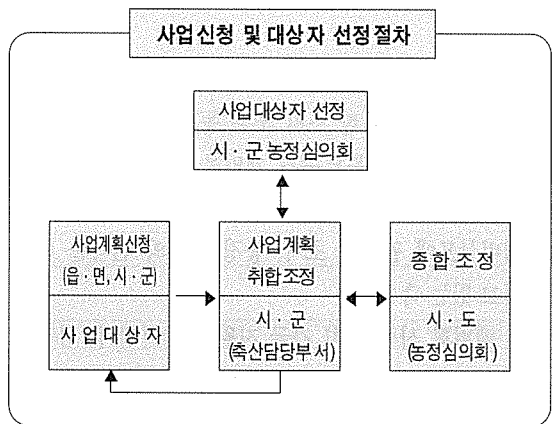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툽밥제조시설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3)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및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다. 신청절차



라. 지원조건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자체 50%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3.0%

③ 품질고급화장려금

1.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량(천두)	318	158	17	61	70
사 계	51,156	22,892	4,092	8,476	8,733
업 보 조	42,886	20,603	4,092	8,476	8,733
비 지방비	8,270	2,289	-	-	-

※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06년까지 동사업을 추진하고이후 종료계획임

2.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급대상

-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거세우를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 단체의 범위
 - 지역 농·축협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도지사 및 등급판정 소장 포함)으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 ※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 법인,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한우협회 시·군 지부 등 임

나. 지급장소 및 금액

-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 지급기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차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금액(두당/천원)
 - 한우 ; 1**A, 1**B등급 은 200천원, 1*A, 1*B 등급 은 150천원, 1A, 1B등급은 100천원
 - 육우 ; 1**A, 1**B, 1*A, 1*B등급은 100천원, 1A, 1B등급 : 70천원

다. 2006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품질고급화 장려금	69,530두	8,733	8,733	8,733	-	-	-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4)

나.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43)

④ 가축개량사업(공공)

1. 젖소 개량 세부사업 시행요령

(1) 기본방침

- 유전능력이 우수한 젖소 정액을 생산·공급하여 개량 촉진
- 유우균 능력검정과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
 - 국내 우량 씨암소의 계획교배와 수정란이식을 통한 검정대상 우량 송아지 생산
 - 당대·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씨수소 선발 및 우량 정액 생산
- 유우균 능력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두당 일정액을 보조 지원

- 정확한 개체철통관리 · 능력조사 및 기록유지로 젓소 유전평가의 신뢰도 제고

(2) 연도별 젓소개량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92-'03	'04	'05	'06	'07-'13	
사업량(중)	2	2	2	2	2	
사업비	보조	63,147	5,650	7,473	6,982	67,890
	융자	3,600				
	지방비	1,538	174	206	220	
	자부담	18,569	6,115	7,244	7,911	
	계	86,854	11,939	14,923	15,113	67,890

(3) 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유우군 능력검정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젓소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당해년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사업을 신청한 검정조합 · 단체 및 검정농가를 심사 · 선정하여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 설명 및 경영지도

○ 젓소정액생산 · 공급

- 유우군 능력검정을 통한 후보 및 보증 씨수소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수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 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의 후손에 대한 유우군 능력검정으로 보증씨수소 선발

- 보유중인 보증씨수소로부터 고품질 정액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재원

○ 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 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

부 보조 지원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가 소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

- 검정우 유성분 분석 재료 : 우유성분 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하여 검정조합에 표준용액 공급 지원

○ 젓소 정액생산 · 공급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이하 "가축개량사업소"라 한다)에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한

(나) 2006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보조	융자	계			
유우군능력검정	150천두	2,541		2,541	220	7,162	9,923
젓소정액생산 · 공급	1개소	4,441		4,441		749	5,190
계		6,982		6,982	220	7,911	15,11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젓소개량 총괄
- 시 · 도 및 시 · 군 : 유우군 능력검정 지도 · 감독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 유우군 능력검정 및 검정조합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젓소개량부) : 젓소정액생산 · 공급
- 검정조합 : 젓소검정 및 검정농가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894)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 041-580-3360)
- 시 · 도 및 시 · 군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02-2080-6551~6573)
- 가축개량사업소(젖소개량부)(☎ 031-965-9588)

⑤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자율)

1. 목적

-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축사 설치, 운영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친환경 축사시설 모델 보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하여
- 친환경축사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사모델 보급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예산인)	2007년 이후
사업량	-개소	-	6	11	130
사업비	계	-	1,900	3,767	128,847
	보조	-백만원	100	183	7,989
	융자	-	1,700	3,400	112,900
	지방비	-	60	110	4,770
	자부담	-	40	74	3,188

※ 3년차 사업('05~'07)으로 추진

4.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배경

- 가축집단 사육지역에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및 가금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업계 손실 증가
- 축산환경 악화시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우려되므로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환경과 조화되

는 축산기반 구축 필요

- 또한,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안정적인 축산입지 확보를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사 시설 필요

나. 지원대상자

-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 사육시설을 이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축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축산농가 또는 농업법인
- 지원대상 : ① 종돈·종계장 ② 전업규모 양돈농가 ③ 전업규모 낙농가

다. 개소당 사업비

○ 지원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 규모		종돈장	종계장	양돈장	낙농
		모돈 300두	30천수	모돈 200두	경산우 30두
지원	축사	1,500	1,000	700	400
단가	기반시설	131.8	131.8	131.8	131.8

- 지원기준단가 : 진입도로 1km(100백만원), 용수개발 1공구(30백만원), 전기인입시설(1.8백만원)

○ 지원조건

	국고		지방비	자담
	보조	융자		
축사	-	100%	-	-
기반시설	50%	-	30	2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라.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원(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지방비 부담(기반시설비) : 이전대상 시·도(시·군)
* 기존축사 철거비 지원 또는 용도변경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

마. 지원내역

- 축사 건축비 : 건축 및 설비비
- 기반시설 : 진입도로, 용수개발, 전기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에 지원단가 및 방법에 의해 지원
 - 기존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사업대상 축사시설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범위내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
 - '06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지원
 - * 개소당 사업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연차별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군간 또는 시·도간 이전(이전 대상지역)
- 시장·군수 : 동일 시·군내에서 이전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친환경축사 운영 효과 등 평가
- 기본계획 하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추천(주변환경, 사육여건 등 감안)
 - 친환경축사 검증 및 시설설치 자문을 위한 협의회 운영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친환경축사 및 우수 사육시설 모델 보급 : 농협,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5, 15)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사의 요건

- 친환경축사의 개념
-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고 주변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축산 시설로서 가축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 할 수 있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설치, 운영

되는 축사

- 친환경축사 요건
- 축사 시설, 주변환경 등이 세부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상기 요건 등을 갖추고 시설로서 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검증을 받은 축사시설

세 부 기 준	
시설	○가축분과 노가 분리되는 시설 및 장비 확보 ○축산업등록제 기준 이하로 가축사육밀도를 유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또는 악취 최소화대책 강구 ○최신 환기시설 설치(돼지, 닭)
환경	○사육장 주변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 ○축사 도색, 조경수 식재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입지
입지	○밀집사육이 아닌 지역(시·군 기준)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고 충분한 부지 확보
운영 시스템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액비화하여 농지에 환원 ○조사료는 가급적 국내산으로 확보(소) ○이전 전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경영일지 기록 및 평가 등에 자료제공

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공공)

①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사업개요>

가. 단계별 추진내용

- 가축식별 시스템 구축(출생에서 도축까지)
- 귀표의 배포와 장착
 - 귀표는 농협중앙회가 농가의 사육두수 및 기부착 두수 등을 감안, 추가 소요분을 파악하여 사전에 축협조합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 배포내역은 DB화 하여 관리
 - 송아지는 출생 후 2주일 이내에 양쪽 귀 모두에 귀표를 부착
- 귀표는 농가가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협의체에서 정한 기관이 대행 가능
- 부착된 귀표가 떨어질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등

일한 개체식별번호의 귀표를 다시 배포

○ 기존 소의 개체 신고(소 개체식별대장 작성)

-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생년월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현황을 신고
- 신고방법 : 주관기관 전산망에 전산입력

○ 송아지 출생 신고

-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출생한 송아지 현황(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을 신고
- 신고 시기 및 방법 : 출생 후 2주일 이내, 주관기관 전산망에 전산입력

○ 이동(전출·전입·폐사) 신고

- 양도·양수자,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사유(전출, 전입, 폐사), 이동일 등을 신고
- *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시기 및 방법 : 1주일 이내, 주관기관 전산망에 전산입력

○ 도축 신고

- 주관기관 전산망에 소 출하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도축을 의뢰하는 중간상인 등은 도축장에 비치된 「도축두수 및 귀표번호 통보서」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하는 소의 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당해 소가 맞는지를 확인, 중간상인 등이 제출한 「도축두수 및 귀표번호 통보서」의해 출하내역을 입력하고, 도축 후 개체식별번호 및 도축일을 주관기관 전산망에 입력
- 도축장 검사관은 귀표부착 여부 및 도축대상 소의 확인, 도축검사결과 처리

○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이력 추적시스템 관리대상에서 제외

○ 위생검사결과 합격여부 주관기관 전산망에 전산 입력
- 도축장에 파견된 등급판정사는 당해 소의 개체식

별번호를 확인하고, 등급판정내역(육질등급 및 육량등급 등)을 입력

나. 각 단계별 정보의 DB 구축 및 정보공개

○ 국가단위에서는 생산농가 등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최소 정보만 신고 받아 관리

- 생산단계 : 소유자(성명, 주소, 전화,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이동사항 등
- 도축단계 : 도축장, 도축일, 등급실적 및 등급 등
- 가공단계 : 가공장, 가공일, 부분육 생산 및 판매실적 등
- 판매단계 : 판매장, 부위별 매입 및 판매실적 등
-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

○ 신고된 자료는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의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

〈추진체계〉

가. 정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5~6)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

나. 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61), 농협중앙회(02-2080-6519)

-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총괄, DB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중앙회 : 농가귀표 관리, 생산단계 지도점검 등

② 가축 공제

1.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공제사업 정착 시까지 납입공제로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
-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개발

- 공제보험사업부 (02-2127-7673)
- 지역조합(축협,농협, 품목) 공제보험담당

2.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종모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의 80%~100% 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 (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 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 까지 보상	- 송아지: 생후2개월이상 - 한우우: 12월~13세미만 - 젃소: 8세미만
중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 입 금 액 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숫소

※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7)

③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장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 보조
-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릴때부터 우유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천명/월,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예산)	2007년
사업량	2,295	210	279	352	352
계	98,767	14,733	20,507	23,760	23,760
사 업 비	98,767	14,733	15,380	16,632	16,632
보 조	-	-	-	-	-
지 방 비	-	-	5,127	7,128	7,128
자 부 담	-	-	-	-	-

3.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 체위증진 및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대상자 : 352천명(초등학생 210, 중학생 69, 고등학생 73)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포함)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270원/200ml
- 급식일 : 250일 기준(방학중 급식 포함)
- 사업기간 : '06.1.1 ~ 12.31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명/일,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학교우유 급식	352	23,760	16,632	16,632	-	7,128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 시비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9~10)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업무 담당과

다.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자치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사업비 확보 및 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

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9.15까지)

- 시·도지사는 배정된 사업비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농림부장관은 예산확정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초·중·고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고 선정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3.30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추가 선정 가능(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포함)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사유 발생시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가능

○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위원회 등)

- 급식우유 공급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 중·고등학교의 학교우유 보조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해당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하여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보조급식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실적에 따라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보조급식과 동일)

-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분유)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방학 중 보조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해당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 가능
 -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전 또는 방학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하되, 1회 배달물량은 15일분을 원칙으로 2회 이상 나누어 공급
- 급식 유업체에서 멸균유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 분유 공급 가능
 - ※ 분유공급 단가 : 6,300원/kg이내(방학기간중 공급량)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제1항

3. 2006년도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보조	응자	
합 계	900호	5,773	5,773	-	
○친환경축산직불금	900호	5,594	5,594	-	
- 직불금	-	5,319	5,319	-	
- 인센티브	-	275	275	-	
○사업관리비 등	-	179	179	-	

가.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 농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 지급단가
 - 기본 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인센티브만 참여 불가)
 - 관리비 : 시장·군수의 이행점검비(151천원/호)

나. 사업주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기본계획하에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도지사
 - 축종별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농가수 배정
 - 시·군간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장·군수
 - 사업홍보,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정산
- 이행기록 장부 기장,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 등을 시장·군수 책임하에 다음 각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실시

Ⅲ 소득보전

① 친환경축산직불제

1. 시책 및 추진방향

-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사업참여 농가를 친환경축산 정착의 핵심경영체로 육성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준수)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또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
- '04~'06년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후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재설정
 - 지속적인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보완으로 점진적 확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 이행기록 장부 기장, 조사료포 확보,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 발생분뇨 퇴·액비 처리 지도 및 확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 작물별 시비량 및 유통경로 확인,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사업홍보, 이행기록 장부 기장 지도 및 점검, 이행기록 장부 분석, 지도요원 교육 등 :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
 - 자조금을 활용한 교육 및 운영 : 생산자단체

다.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라. 지급요건(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장 또는 시설(축사, 분뇨처리시설, 조사료포 등)에 대하여 동일한(적정) 사육밀도 유지, 분뇨처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함

<기본요건>

- (한육우, 젓소) :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 환원
- 축산분뇨의 농지환원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 유지
 - 농지의 산성화 방지 등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방지
 - 휴경으로 황폐화될 수 있는 농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보전 및 농지의 훼손방지(필요시 농지 등으로 복귀 용이)
- 확보방법 : 사료포(논, 밭)·초지를 소유 또는 임차
 - 축종별 분뇨 처리기준면적의 60%이상 확보
- 사료포를 2회(1회)이상 사료작물 파종·생산 등에 이용

- 참여농가 소유(임차)농지가 쌀생산조정제, 마늘작목 전환사업에 참여한 경우 확보 필요면적에는 포함시키되,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
-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2]에 의한 하급초지(25톤/ha미만) 제외
 - *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채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해당면적의 1/2을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초지는 초지에 준하여 확보면적에 포함
- 이행요건 : 확보된 사료포에 발생 분뇨의 60%이상을 환원

<공통 부대요건>

- 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주 1회이상)
 - 발생된 축산분뇨 처리내용 및 경로
 - 처리형태(퇴·액비 등), 처리방법(농지환원, 판매 등), 처리시기 등
 - 조사료 생산 및 활용(소)
 - 예방접종, 전염병 검진,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항생제 사용내용 등
-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 금지
 -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수과원 고시 제2003-4호, '03.7.26) 준수
- ③ 축산농가의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
 - 전문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 이수(4시간 이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로 환경개선
- 환경개선제 사용으로 축사 주변 악취 방지